

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

- 개정조례안의 명칭이 "영생"으로 하는 것은 건설회사 명칭과 기독교적인 용어가 함축되어 있어 수정동의

※ 붙임 :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7. 심사결과

- 1999. 12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